

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7. .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감일동 1통 1, 2반 일부 지역의 행정동 경계 조정으로 주민 생활권 일치 및 주민 편의 도모

2. 주요내용

- 가. 감일동 1통 1, 2반 일부 지역에 대한 행정동 경계조정
- 종전 감일동 301필지(120,562㎡) → 감북동 편입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5. 5. 12.~2026. 6. 2.(21일간)
- 나. 의견 내용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 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

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감북동 구역(관할 법정동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행정운영 동명	동장 정수	구 역(관할 법정동)
감북동	1	감북동 광암동 중 196의 1번지, 198번지, 202의 2번지부터 202의 7번지까지, 205번지, 205의 4번지, 207의 1번지부터 207의 3번지까지 211번지부터 398번지까지, 산 22번부터 산 72의 2번까지, 산 77의 2번지부터 산80의 6번지까지 감일동 중 서울외곽순환도로(감일2육교~한국도로공사수도권본부 구간) 북쪽지역, 감일동 194-4, 424, 419-19번지를 제외한 감이천 북쪽지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자치행정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정 주 연
	팀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팀장 이 재 민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서 정 욱 (031-790-5409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행정운영 동의명칭·관할구역 및 동장정수<제2조 관련>

[현 행]

행정운영 동명	동장 정수	구 역(관할 법정동)
감북동	1	감북동, 감일동 중 서울외곽순환도로(감일2육교~한국도로공사수도권본부 구간) 북쪽지역, 광암동 일부 광암동 중 196의 1번지, 198번지, 202의 2번지부터 202의 7번지까지, 205번지, 205의 4번지, 207의 1번지부터 207의 3번지까지 211번지부터 398번지까지, 산 22번부터 산 72의 2번까지, 산 77의 2번지부터 산80의 6번지까지

[개정(안)]

행정운영 동명	동장 정수	구 역(관할 법정동)
감북동	1	감북동 광암동 중 196의 1번지, 198번지, 202의 2번지부터 202의 7번지까지, 205번지, 205의 4번지, 207의 1번지부터 207의 3번지까지 211번지부터 398번지까지, 산 22번부터 산 72의 2번까지, 산 77의 2번지부터 산80의 6번지까지 감일동 중 서울외곽순환도로(감일2육교~한국도로공사수도권본부 구간) 북쪽지역, 감일동 194-4, 424, 419-19번지를 제외한 감이천 북쪽지역

관계법령 발췌서

1 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, 타법개정]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
-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(이하 “행정동”이라 한다)·리(이하 “행정리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2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3. 6.] [조례 제2279호, 2024. 3. 6, 일부개정]

제1조 (목적)

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남시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(이하 “법정동“이라 한다)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행정동의 명칭,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)

행정운영동의 명칭,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.